

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

[시행2024. 12. 31.] [중앙119구조본부훈령 제61호, 2024. 12. 31., 전부개정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·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"교육훈련"이란 전문 구조대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산악, 수난, 항공, 드론, 대테러 등 인명구조, 구급활동을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제반 소방업무를 포함하여 행해지는 전문교육·훈련을 말한다.
- "위탁교육훈련"이란 구조대원의 전문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·외의 공인 교육훈련기관 및 단체 등 외부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.
- "교수요원"이란 강의, 훈련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특수구조, 구급 등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·외부의 전문가로 특수대응훈련과의 위촉을 받은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(이하 "구조본부"라 한다) 대원과 시도 소방공무원 등 구조본부에 입소하는 모든 교육훈련생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교육·훈련운영위원회 설치) ①구조본부의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운영위원회(이하 "위

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교육훈련과정의 개설·폐지 등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육훈련생의 선발 및 입·퇴교,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
3. 교수요원에 대한 선발 및 구성 등 교수 인력풀 구성에 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훈련 발전과 시설, 장비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

② 위원장은 특수대응훈련과장(이하 "훈련과장"이라 한다)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(이하 "본부장"이라 한다)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,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교육훈련의 기회) ① 교육훈련의 기회는 구조본부의 대원과 시도 소방공무원 등에게 제7조(교육훈련생 선발)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.

② 훈련과장은 교육훈련과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절차 및 추천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발하여야 한다.

제2장 교육훈련 계획

제6조(계획 수립) ① 훈련과장은 재난환경과 정책적 목적 및 수요, 구조대원의 역량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년도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교육훈련의 기본방향
2. 교육훈련과정과 목표, 교수요목, 기간, 대상 및 인원
3.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 및 수요조사 등
4. 교재 편찬 및 교육훈련 성적 평가방법

5.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훈련과장은 각 교육훈련과정 운영 1주일 전까지 일시, 장소 및 대상, 교과목과 교수요원 지정, 훈련생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본부의 부서와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소방청 및 유관기관 등의 요청이 있거나 대형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제1항의 교육훈련 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육훈련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교육훈련 운영 중 구조본부의 대형재난 대응 등 사정으로 훈련과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육훈련생 선발) ① 교육훈련생의 선발 및 추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교육훈련과정 참여를 위한 사전 공개모집
2.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적성(자격, 경력, 교육훈련 이수이력, 교수 경력 등)
3. 기타 교육훈련 과정에 따른 별도 선발 및 추천

②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선발 및 추천을 위하여 제4조(교육·훈련운영위원회 설치)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·선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선발과 관련하여 별표 2의 위탁교육 등 파견 대상자 선발 평가표(안)을 참고하여 선발할 수 있다.

제8조(교수요원 지정) ① 담당교수는 교육훈련 과정별 전문성 있는 대원과 외부 전문인력 등으로 지정하며, 필요시 보조강사 또는 진행요원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.

②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 과정장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훈련과장 또는 훈련과정장은 교육운영교수를 지정하여 교육훈련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지원,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, 안전관리를 담당할 교수요원도 지정하여야 한다.

④ 교수요원으로 지정 또는 요청받은 구조본부 대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근무여건 조정 등 교수활동에 대해 지원하여야 하며, 교수활동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⑤ 교수요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강사에 대하여는 강사료 지급 등을 통해 교육훈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우수 교수요원 확보 등) ① 본부장은 내부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특수 구조 관련 국·내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교수활동 실적을 관리하여 교육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② 교수요원 위촉을 위한 국내·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에 대하여는 별표 2 위탁교육 등 파견대상자 선발 평가표에 따라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육훈련 방법) ①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, 특별히 필요한 경우 야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훈련과장은 교육훈련의 목적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참여와 실습,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교수 분위기

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설 및 공간의 제약,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훈련과정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교육훈련 성적평가) ① 훈련과장은 교육훈련의 목표를 제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통해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. 다만,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훈련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사전 과제 수행, 필기, 실기평가 및 강의 수행 등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적합한 평가방법과 기준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평가결과 처리) ① 평가점수가 배점의 60%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, 다시 평가할 수 있다.

② 교육훈련 성적평가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참여도를 향상시켜야 한다.

③ 평가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부정행위, 정당한 시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거나 퇴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교육훈련 결과) ① 훈련과장은 교육훈련 종료 시 교육생 설문 결과 등을 근거로 교육훈련 개선,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자 현황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등을 교육생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포상) ① 교육훈련성적 평가 결과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

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,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.

1. 상장: 교육운영과정에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
2. 표창장: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

② 포상은 수료식에서 직접 수여하거나 소속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 및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3장 교육훈련 운영

제15조(교육생 등록) ① 각 교육훈련과정별 교육생 입교등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, 출석상황부를 겸할 수 있다.

② 교육훈련생 생활점검 등을 위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카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학생장 선발 등) 교육훈련과정별 교육생 대표를 선발하여 별표 1의 이름표 및 표지장 패용 등 생활지원 및 교육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7조(생활실 운영) ① 훈련과장은 교육훈련과정별로 생활실 운영 여부에 대해 교육수요 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.

② 교육운영교수 등을 우선하여 생활실을 배정할 수 있고 교육생의 구성 및 생활실의 여건에 따라 합숙 또는 비합숙 운영할 수 있다.

제18조(교육훈련시설 사용) ① 훈련과장은 교육훈련에 사용될 제반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각 특수구조대장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② 해당 교육과정의 안전관리교수는 교육훈련시설 사용에 대한 시설물, 장

비, 비품 등 관리 및 훈련장 내 질서유지 등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생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.

제19조(입교식) 입교식은 훈련과정 개시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훈련과장은 교육훈련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절차 등을 마련하여 입교식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20조(생활일과표) 훈련과장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일과표에 준하여 교육운영을 효율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. 다만, 훈련목적 상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1조(일과 점검) ① 생활지도교수는 직접 또는 학생장 책임하에 교육훈련생의 건강상태, 임의 이탈 여부, 생활환경, 건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② 생활지도교수는 일과점검의 결과를 교육훈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훈련과정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(외출 · 외박) ① 주간 교육훈련시간 중 외출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훈련과정장 등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합숙 운영 중 외박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교육훈련 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.
③ 외출 · 외박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써 신청한다.

제23조(복장) 교육훈련생은 「소방공무원 복제 규칙」에서 정한 기동복 또는 활동복을 착용하도록 하되, 각 훈련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24조(당연 퇴교) 교육훈련생이 법령에 따라 구속되거나 징계 처분으로 파

면, 해임 또는 직위 해제 시에는 당연 퇴교로 간주하며, 본부장 보고를 통해 지체 없이 교육훈련생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5조(직권 퇴교) 훈련과장은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도박, 음주 및 성관련 비위사실 등 교육과정 운영을 심히 저해하거나, 품위의무 위반 시에는 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교 처분할 수 있으며, 퇴교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훈련생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6조(수료 기준) 각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한 것으로 하며,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공지하여야 한다.

제27조(수료증 발급) ①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별도의 수료증을 발급, 수여할 수 있으며, 대상자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.
② 발급된 수료증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에 등재 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28조(수료식) ① 수료식은 교육훈련 종료 및 수료자 확정 후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수료식의 절차 및 형식과 내용은 교육훈련 과정별 달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장 교육훈련 예산

제29조(예산 편성) 구조본부 대원의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제30조(교육비 부담) 외부 교육훈련생 또는 훈련을 위탁하는 기관·단체에

대해서 식비, 숙박비, 입장료, 대여료, 재료비 등 훈련 실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31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[별표 1]

훈련생 이름표

○ 재 질 : 종이/투명 플라스틱(아크릴)

○ 크기 : 가로 86mm × 세로 53mm

중앙119구조본부 제○기 ○○○○○○○과정	
	○○ 소방본부 소방○ ○번 ○ ○ ○

학생장 표지장

○ 재 질 : 종이/투명 플라스틱(아크릴)

○ 크기 : 가로 86mm × 세로 53mm

중앙119구조본부 제○기 ○○○○○○○과정	
	○○ 소방본부 소방○ ○번(학생장) ○ ○ ○

위탁교육 등 파견대상자 선발 평가표(안) (제7조 관련)

방법	구분	기준	세부기준	점수	비고
정량 평가 (60)	경력 (25)	근무경력 (10)	① 재직기간(본부) (5)	10년 (5) 5~9년(3) 5년 미만(1)	총 재직 또는 본부 근무 경력
			② 특수활동 (5)	00회(5~1)	재등급분류 참여(회) ※ 중구본 현안 T/F활동 참여 등 가점(10점)
		교육활동 (15)	③ 교육활동 (15)	교과정별 참석일수	최근 3년간 교수경력
			※ 최근 2년 이내 유사 교육경력, 위탁교육 수혜 시 감점(10점)		
	자격 (25)	내부자격 (15)	④ 화재대응능력		전문, 1급 4개 보유 시 15점(전문,1급 3.75점, 2급 2.5점)
			⑤ 인명구조사		
			⑥ 응급구조사		
			⑦ 화학대응능력		
		기타 자격, 학력 (10)	⑧ 전문능력 평정 가점 평정 준용		박사, 기술사 급 5점 석사, 기사, 등 3점 학사, 기능사 등 2점
	언어 (10)	영어 등 (10)	⑨ 소통 원활		가점평정규정(제5조) 별표 3 준용(10~7~5점)
			⑩ 소통 가능		
			⑪ 이해 가능		
정성 평가 (40)	직무 수행 능력 (40)	직무역량 (30)	⑫ 이론, 실무지식 운용, 개선의지		자격보유, 부서 경력, 적 극성 등
			⑬ 협조성, 책임감		내근부서 등 근무경력, 표창, 징계 등
		교육의지, 성실성 (10)	⑭ 교수활동 의욕		교수활동 시 적극성 및 직장 성실도
			⑮ 친화력		주변 동료평가 등
합계					

- (1) 위 평가표는 위탁교육 파견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각기 교육 목표를 달리하는 각 과정 선발 평가 심의의 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.
- (2) 언어(영어) 기준은 선발 목적에 따라 삭제,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()과정 교육훈련생 등록카드

※ 교 번 : 번

성 명	한글		생년월일			사진
	한자		성별			
소 속				직 급 (계급)		
현 주 소				훈련중 연락처	사무실	
E-mail					자 택	
					핸드폰	
최종학력	년 월 일부터 학교 과 년(졸업·수료·종퇴) 년 월 일까지					
최초임용일 (입사일)	년 월 일		현 계 급 임 용 일	년 월 일		
구조관련 자격·면허	1. 2. 3. 4.					

()과정 생활일과표

구 분	내 용	시 간		비 고
오 전	기 상	07:00		
	아침체조 및 세면	07:00 ~ 07:50	50분	운동장
	아침식사	07:50 ~ 08:20	30분	
	자 습	08:20 ~ 08:50	30분	대기실 및 강의실
	훈련출장	08:50 ~ 09:00	10분	
	오전훈련	09:00 ~ 11:50	2시간50분	
오 후	중 식	11:50 ~ 12:50	60분	
	훈련출장	12:50 ~ 13:00	10분	
	오후훈련	13:00 ~ 16:50	3시간50분	
	석식 및 세면	17:00 ~ 18:00	60분	
	자유시간	18:00 ~ 19:00	60분	
	자율학습	19:00 ~ 21:00	2시간	대기실 및 강의실
	일과점검 준비	21:00 ~ 21:30	30분	
	일과점검	21:30 ~ 22:00	30분	
	취 침	22:00		

제 ○○호

상 장

○○소방본부

소방○ ○○○○

위 공무원은 「제○기 ○○○○○○
과정」에서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여
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
수여합니다.

20○○년 ○월 ○일

중앙119구조본부장 ○ ○ ○

제○○호

표 창 장

○○소방본부

소방○ ○○○○

위 공무원은 「제○기 ○○○○○○
과정」에서 출선수범하여 훈련과정의
성공적 운영에 기여하였기에 표창합
니다.

20○○년 ○월 ○일

중앙119구조본부장 ○ ○ ○

제 20○-○ 호

수 료 증

○○소방본부

소방○ ○○○○

위 공무원은 중앙119구조본부의
「제○기 ○○○○○○○○○과정」을 수료
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

20○○년 ○월 ○일

중앙119구조본부장 ○ ○ ○

Issue No. 2017-



Certificate of Commendation

Awarded to

훈련생 영문 성명

(00th 월, 생년 / 국적)

For your enormous contribution(best grades)
to(at) the 0000 Course
held at National 119 Rescue Headquarters of
Korea

00th 월, 년

Major Fire Marshal 본부장 영문 성명, the director
of the National 119 Rescue Headquarters

수료증 발급대장

[illegible]